

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민석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3167
----------	------

발의 년 월 일: 2025년 10월 20일

발의자: 이민석 의원(1명)

찬성자: 강석주, 고광민, 김영철,
김원태, 김재진, 김종길,
김태수, 김형재, 남궁역,
남창진, 민병주, 윤기섭,
윤종복, 이성배, 임춘대,
허훈, 홍국표, 황유정
의원(18명)

1. 제안이유

- 2012년부터 서울도서관 내에 '서울기록문화관'을 설치·운영해왔으나, 서울도서관 공간재배치 계획에 따라 해당 시설이 2025년 9월 30일자로 운영이 종료되어 실효성이 상실된 조항을 삭제하고,
- '서울기록문화관'의 관련 기능을 서울기록원으로 이전하여 전시·전학·교육프로그램 등의 운영에 대한 안정적 추진 근거를 마련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서울기록문화관의 각 호의 업무를 서울기록원으로 이전하고, 전시·교육·체험 등 구체적 시민참여 프로그램으로 명시하여 안정적 추진 근거를 마련함(안 제11조).
- 나. 서울기록문화관 관련 조항을 삭제함(안 제22조)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」

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의 제목 “(시민편의 시설 운영)”을 “(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가치공유와 홍보를 위해 열람·전시·문화·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”를 “가치공유 및 홍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”로 하며,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중요 기록물의 전시 및 관련 콘텐츠 구축
2. 견학·교육·체험 등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
3. 그 밖에 기록물 홍보에 필요한 사항

제22조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1조(<u>시민편의 시설 운영</u>) 서울 기록원은 투명한 시정구현과 기 록물의 <u>가치공유와 홍보</u>를 위해 <u>열람·전시·문화·교육 프로</u> <u>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11조(<u>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</u>) ----- ---- <u>가치공유 및 홍보를 위해</u> <u>다음 각 호의 프로그램을 운영</u> <u>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u>중요 기록물의 전시 및 관련</u> <u>콘텐츠 구축</u> <u>견학·교육·체험 등 시민참</u> <u>여 프로그램 운영</u> <u>그 밖에 기록물 홍보에 필요</u> <u>한 사항</u> <p><u><삭 제></u></p>
<p>제22조(서울기록문화관) ① 시장 <u>은 중요 시정기록의 전시·홍보</u> <u>를 위해 서울기록문화관을 설치</u> <u>· 운영 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서울기록문화관은 다음의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u>시의 행정 변천사와 각종 중</u> <u>요 기록물의 전시·홍보</u> <u>시정 주요문서 열람 서비스</u> <u>제공</u> <u>견학·교육·체험 등 시민참</u> <u>여 프로그램 운영</u> <u>그 밖의 공공·민간 기록의</u> 	

현 행	개 정 안
<u>임대 · 위탁 전시</u> <u>③ 서울기록문화관의 개관시간</u> <u>과 휴관일은 「서울도서관 운영</u> <u>에 관한 규정」 제3조 및 제4조 <u>에 따라 운영 할 수 있다.</u> </u>	

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대상 사유서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11조(시민편의 시설 운영)의 내용을 수정 및 신설하여, 기존 서울기록문화관의 기능을 서울기록원으로 이관하고, 서울도서관 공간재 배치 계획에 따라 서울기록문화관의 운영이 종료되어 실효성이 상실된 제22조(서울기록문화관)를 삭제한 것으로, 별도의 비용을 수반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

재정분석과장 이 선 희

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

추계분석관 김 진 형

☎ 02-2180-7954

e-mail : kjh0816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